

2017 해커스 외환전문역 1종 강의 교안 법 개정 수정사항

과목	페이지	수정부분	수정 전 → 수정후
1 과목	p.16	대외채권의 회수와 채권회수기간의 연장	해당내용 전체 삭제
	p.18	증빙서류 제출의무의 면제	(1) 거주자의 증빙서류미제출 송금의 경우 ④ 지급한도 : 건당 (2 천불) → (3 천불) 초과 ⑤ 통 보 ㉠ 관세청 및 금융감독원 통보 : 건당 (2 천불) → (3 천불) 초과 시 ㉡ 건당 (2 천불) → (3 천불) 이하 송금은 송금누계에 포함되지 않고, 지정거래대상에서도 제외함 (5) 소액 자본거래 영수의 경우 ① 신고예외요건 ㉠ 자본거래로서 거주자(외국인거주자 제외)의 건당 영수금액이 미화 (2 천불) → (3 천불) 초과 5 만불 이내일 것
	p. 25	국세청장, 관세청장,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	국세청장 앞 통보대상 • 건당 (2 천불) → (3 천불)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지급등의 금액이 연간 미화 1 만불 초과 시 관세청장 앞 통보대상 • 건당 (2 천불) → (3 천불)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지급등 금융감독원장 앞 통보대상 •건당 (2 천불) → (3 천불) 초과 증빙서류미제출 지급 금액이 연간 미화 1 만불 초과 시
	p. 27	상계의 신고예외거래 및 신고사항	신고예외거래 • 일방의 금액(분할 지급등은 합산함)이 미화 (2 천불) → (3 천불) 이하인 채권 또는 채무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
	p.29	신고예외거래 및 한국은행총재 신고사항	② 제 3 자와의 거래가 부득이한 경우 ㉠ 미화 (2 천불) → (3 천불) 이하의 금액을 제 3 자 지급등을 하는 경우 등
	p.41	신고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장,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	신고예외거래 • 거주자 간에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래로서 동일자에 미화 (2 천불) → (3 천불) 이내에서 대외지급수단을 매매하는 거래
2 과목	p.4	외화 유동성리스크 관리 및 측정	(2) 외화 유동성리스크 측정 만기불일치비율 [•잔존만기 7 일 이내의 만기불일치 비율은 -3%, ] → 삭제 잔존만기 1 개월 이내의 만기불일치 비율은 -10%가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
	p.14	당발송금의 이해	(2) 당발송금의 특징 ④ 외국환거래법령에서 정하는 '인정된 거래'에 대해서만 송금이 가능 미화 (2,000 불) → (3,000 불) 이하의 소액송금,

		용역대가, 수입대금 송금 등은 거래은행 지정 없이 송금 가능)
p.15	타발송금의 업무처리	<p>(2) 타발송금이 외국환거래법령 등에 의한 신고대상인지 여부 확인</p> <p>① 타발송금 금액이 건당 미화 (2 천불) → (3 천불)을 초과하는 경우</p> <p>② 수령(영수)행위가 신고대상인 자본거래로서 거주자(외국인거주자 제외)의 거래 건당 영수금액이 미화 (2 천불) → (3 천불) 초과 5 만불 이내이고,</p>
p.20	환전영업자의 업무범위	<p>(3) 환전영업자의 업무범위 → 내용 추가</p> <p>① 외국통화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외국환매각신청서를 제출받아 주민등록증, 여권, 사업자등록증, 납세번호증 등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함</p> <p>② 외국통화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당해 외국통화 등의 취득이 신고 등의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(동일자, 동일인 기준 미화 2 만불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)하여야 하며, 외국환매각신청서 사본을 익월 10 일 이내에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</p> <p>③ 외국인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 등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1 회에 한하여 외국환매입증명서를 발행·교부하여야 함</p> <p>④ 환전영업자는 동일자·동일인 기준 미화 2 천불 이하의 외국통화 등을 외국환매각신청서 및 외국환매입증명서 없이 매입하거나 매각할 수 있음</p> <p>⑤ 환전영업자는 환전장부, 외국환매각신청서,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환전관계 서류를 해당 연도 이후 5 년간 보관하여야 함</p>